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. 6. 22(목) 10:00

###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#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24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#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,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#### 3. 참고사항

#### 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○ 관련서류 : 2022회계연도 결산서(안)

# 4. 예비비 지출 현황

O 일반예비비 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 출 사 유
계		46,289,000	43,832,140	2,456,860	
문회체육과	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	15,000,000	14,069,000	931,000	서서울미술관 건립 착공을 위해 부지에 설치한 가설 건 축 물 철 거
	금천문화거 점공간 조성	6,517,000	6,319,000	198,000	당초 해체 심의 비대상으로 비상주감리로 금액을 산 정했으나, 서울시 해체공 사장 총괄운영 지침관련 해체 심의 대상으로 변경 되어 상주감리로 진행
	금천구민문 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	24,772,000	23,444,140	1,327,860	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지하3층 기계실 점검 결 과 스팀배관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불 가능한 상태로, 예비비를 편성하여 긴급 보수공사

## O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

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 출 사 유
계		133,000,000	131,204,450	1,795,550	
문화체육과	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지원	133,000,000	131,204,450	1,795,550	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인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 원 하 기 위 함

#### 5. 검토의견

- 2022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지출 문화체육과 3건 4,383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1건 1억 3,120만원을 지출함
- O 문화환경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## □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6. 7.] [법률 제19428호, 2023. 6. 7., 일부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6. 9.〉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. 〈신설 2014. 5. 28.〉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〈신설 2014. 5. 28.〉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〉

[전문개정 2011. 8. 4.]